환·경·관·련·질·의·응·답

정수장 여과사 재활용 관련

Q 수돗물(생활용수:정수)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 여과재(모래)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래(유효경 약1.0㎜)의 경우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역세척을 실시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일반적인 모래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사업장 부지내 노면정리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문의드립니다.

A 여과재로 사용한 모래는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재활용 할 수 없으며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장시설 중 연속식 관련

Q 제품 또는 원료가 도장공정에서 건조공정으로 옮겨져 연속적으로 작업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구조일때 1일 작업시간이 4시간 정도 작업할때도 연속식으로 분류를 하는지요? 아니면 위와 같은 공정일지라도 8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연속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A 피도장물 또는 원료가 도장공정에서 건조공정으로 옮겨져 연속적으로 작업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장시스템을 갖추거나 1일 8시간 이상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도장시설의 1일 가동시간은 통상적인 작업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조업시간으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이상 조업하는 것으로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사업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1일 4시간 가동하더라도 1일 최대 8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도장시설은 연속적인 도장작업 시스템(구조)을 갖춘 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대기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Q 기존부터 운영되어 오던 양조간장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정도가 미미한 걸로 판단되어 방지시설의 면제를 받았으며, 배출시설로는 증자시설(5㎥)과 발효시설(92㎥×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법이 바뀌어서 음식료품제조시설 중 산·알카리처리시설과 건조시설(연료사용량 60㎏ 이상 또는 용적 5㎥ 이상)만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던데요. 이렇다면 공장에서 지금 시점에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31일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종전 별표3)의 12.음식료품제조시설중 증자시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며, 동규정은 2007.7.1일부터 적용됩니다.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2007.9.30일까지 행정기관에 변경허가(신고)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상의 기재내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증자, 발효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면 될 것임).

폐기물 최종 처리자 재위탁 행위

Q 저희 업체는 식품회사로서 식물성 잔재물이 발생 됩니다.

현재 식물성 잔재물의 처리업체의 계약만료 및 단가 협의 실패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되는점이 최종 처리업체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 업체가 또다른 업체로 재 위탁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하며, 문제 발생시 저희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되것인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한해 막대한 비용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A 폐기물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폐기물배출자인 귀사도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토양오염누출검사대상시설 해당여부

Q 유류 옥외탱크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50㎝ 정도의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후 그 위에 추가로 40㎝ 정도의 돌출 콘크리트턱을 만들고 그 위에 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는 땅이 아닌 돌출콘크리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누출시 가장 자리로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육안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 토양오염검사결과 또한 토양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상기 시설의 경우 누출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10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개방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장치산업 특성상 24시간 연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는 예외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시설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누출검사대상이 아닙니다.

10만리터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은 현재 저장물질을 비우지 않고 누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누출검사는 시설의 특성 및 운영형태, 유류의 특성 등에 따라 직접방식(비파괴검사법) 및 간접방식(액면레벨측정법 등) 중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위탁처리 할 경우

Q 음식물자원화(퇴비, 사료, 연료)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탈수된 음식물을 자원화(퇴비, 사료, 연료)하지 않고 탈수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공장에 처리비를 주고 위탁처리할 경우 질의 사항입니다.

질의1) 자원화시설(퇴비, 사료, 연료)에서 탈수된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하지 않고 공정 중간에서 배출할때 사업장폐기물배출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음식물감량화 시설에서 발생한 탈수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공장에 처리비를 주고 재위탁 처리시 탈수된 음식물찌꺼기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이러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요?

A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8] 제1호 나목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퇴비·사료생산 등)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경우 수탁받은 내용대로 처리(재활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수분만 제거(탈수)만 하여 다른 처리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의 재위탁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처리시설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수의 위탁처리 가능여부

Q 하수처리예정구역 내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 시설물을 준공하고 사용하기 위해 오수 및 하수를 위생공사등에 전량 위탁처리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시설물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오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오수가 배출되지 않으니 가능할꺼라 생각되는데 그 법적근거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위탁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응시설에서 밀폐계로 저장시설로 이동후 가스배출시 배출시설여부

Q 화학제품 제조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상의 반응시설에서 반응된 반응액(액상)이 밀폐계로 전량 적은용량(1㎥)의 저장시설로 이송됩니다. 이때 반응시설에서는 배출되는 가스배관이 없고, 반응액이 이송된 저장시설에서 증기압등에 의해 가스(염화수소)가 발생되어 가스 배관에 의해 흡수에 의한시설로 이송되고 처리되어 배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50㎥ 이하의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1㎥ 이상의 반응시설은 배출시설 규모 이상이지만 직접 대기오염물질을 가스의 형태로 배출이 되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반응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인허가시 배출가스량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밀폐계로 이어진 저장시설에서의 배출가스량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용적 1㎥ 이상의 반응시설에서 발생된 염화수소가 밀폐된 상태로 대기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저장시설로 이송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은 반응시설에서 발생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제조공정이 밀폐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응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량과 저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생가스량이 동일(온도, 압력 보정)할 것이므로 반응시설 또는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최대 배출가스량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장시설(약품탱크)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Q 소각로 설계를 함에 있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소각로 공정:소각로 → 반건식반응탑 → 건식반응탑 → 여과집진기 → 연돌)

건식소석회저장조의 용량은 10㎥이며, 분말소석회저장탱크에 약품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비산하는 분말가루를 잡기 위해 밴드필터팬(집진시설, 1,200N㎥/hr × 200㎜Aq)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설치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종전 별표3) 제14호 및 비고13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등의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용적 50㎥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득한 사업장의 폐기물배출자 신고

Q 당사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5종사업장입니다.

고무류를 사용하여 롤러를 생산하는 고무제품제조업이며 폐기물은 일일 40㎏정도의 양이 발생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10조1항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확인하여 보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자' 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폐기물의 양이 50킬로 미만인데 이럴 경우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1일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기름함유량 5% 이상 폐사 적법처리 방법

Q 기름함유량이 5% 이상인 폐사(廢沙)를 고상폐유로서 소각 또는 안정화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타르핏치류 또는 다른 종류로서 관리형매립지에 배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의 성분분석 결과 기름성분이 5% 이상함유되었다면 지정폐기물 중 고체상태의 폐유에 해당되며 폐기물처리계획서상의 분류번호는 06-01-06에 해당됩니다.